

# 『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고헌민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저감을 유

도하기 위해 시장은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요청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